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9.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 ☐ (주최/주관)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 (사업목적) 도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기술 확산 기반 마련
-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1.
- ☐ (지원유형) ①제조로봇 도입·실증지원 ②제조로봇 고도화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비율
제조로봇 도입·실증 지원	· 제조기업의 제조로봇 도입 비용 지원	3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0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제조로봇 고도화 지원	· 기 운영 로봇의 기능 추가, 개선 등 지원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2. 지원유형별 세부내용

지원유형 ① 제조로봇 도입·실증 지원

□ 지원목적 : 도내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도입실증 지원

□ 지원분야

○ 뿌리(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로봇·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공정

※ (첨부1)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202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참조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구분	역할
도입기업 (제조기업)	▪ (제조로봇 도입) 공정 구축 및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안전인증) 도입 공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성능검증 수검) 로봇 도입 후, 현장평가(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5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도입결과 사례 공유
공급기업 (로봇 SI기업)	▪ 로봇공정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사업참여 조건

구분	도입기업	공급기업
조건	경기도 내 기업	지역무관
컨소시엄 구성	단일기관	단일기관
중복신청	○	○
중복선정	X	○
필수여부	○	○

※ 전년도 제조로봇 도입·실증지원 수혜기업은 동일유형 신청 불가(고도화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25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첨부4)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예산한도: 도입 예정인 로봇공정모델의 기준단가(총 도입비)

구분	로봇공정모델을 활용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
사업비 구성	■ 로봇시스템(로봇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 SI비용(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사업비의 15% 이내) ■ 수수료(로봇공정 안전인증기관) - 안전설계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 안전인증 수수료는 (첨부5) 로봇공정 안전인증기관 단가표를 참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에 반영 * 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는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에서 부담 *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제외 * 공정도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부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편성)

□ 지원규모

○ 3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억 원 지원(총 사업비의 60% 이내)

구분	지원규모	
지원금액(도비)	기업 당 최대 1.2억	
사업비 구성	경기도비	민간부담금
	60%	40%

-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목표	금액		총 사업비
		경기도비(60%)	민간부담금(40%)	
도입기업A	공정A	1.2억원	0.8억원	2억원
도입기업B	공정B	1.2억원	1.3억원	2.5억원
도입기업C	공정C	0.96억원	0.64억원	1.6억원

지원유형 ② 제조로봇 고도화 지원

□ 지원목적 : 도내 제조로봇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 로봇 공정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 중 로봇 자동화 공정이 구축된 기업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구분	역할
도입기업	▪ (제조로봇 도입) 공정 구축 및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성능검증 수검) 로봇 도입 후, 현장평가(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5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공급기업 (해당 시)	▪ (제조로봇 설치) 로봇공정 실증 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사업참여 조건

구분	도입기업	공급기업
주요역할	수요	공급
조건	경기도 내 기업	지역무관
컨소시엄구성	단일기관	단일기관
중복신청	○	○
중복선정	X	○
참여필수	○	X

※ 전년도 제조로봇 고도화지원 수혜기업은 동일유형 신청 불가(도입·실증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 운영 중인 로봇의 기능개선, 현장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로봇 부품(그리퍼, 액츄에이터) 교체 및 설치, 현장 맞춤형 SW 구축 등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5백만 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지원규모	
지원금액(도비)	기업 당 최대 35백만 원	
사업비 구성	경기도비	민간부담금
	70%	30%

-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목표	금액		총 사업비
		경기도비(70%)	민간부담금(30%)	
수요기업A	로봇 고도화	35백만원	15백만원	50백만원
수요기업B	SW 개선	35백만원	35백만원	70백만원
수요기업C	로봇 자동화 설계	21백만원	9백만원	30백만원

3. 추진절차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26. 3. 9 ~ 4. 10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공고 게시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컨소시엄→ 경기TP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진행	'26. 4월 중순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요건검토 ※ 서류평가 전 추가 증빙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재무건전성 및 공정부합도 심사	경기TP, 평가위원회
법위반 조회	'26. 4월 중순	○ 서류평가 선정과제의 법위반 사실 조회 ○ 법위반기업 이의신청 접수	경기TP
발표평가 진행	'26. 4월 하순	○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26. 5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경기TP
협약체결	'26. 5월 초	○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경기TP→ 컨소시엄
사업진행	'26. 5월~10월	○ 사업착수 및 진행	컨소시엄
중간점검	'26. 7월~8월	○ 진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 수시 점검 가능	경기TP
결과평가	'26. 11월	○ 사업비 정산 ○ 도입기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현장평가) 진행	경기TP↔ 컨소시엄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6. 3. 9.(월) ~ 4. 10.(금), 16:00 限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양식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도입·공급	
2	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	서식2	도입·공급	
3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외주가공 등 외부용역 수반 항목은 식별 가능하도록 비교란 '외주 표기' (고도화)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과제는 도입기업이 제출	-	공급 (도입)	날인 必
4	사업자등록증명원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도입 예정 공장주소가 본사와 다를 시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	도입·공급	3개월 이내 발행본
5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도입·공급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도입·공급	1개월 이내 발행본(신청일 기준)
7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3	도입·공급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4	도입·공급	
9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5	도입·공급	
10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6	도입	
1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7	도입	
12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서식8	도입	
13	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	서식9	공급	해당 시 제출
별첨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10	도입	

□ 유의사항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에 기업명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목록 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예시: 제조로봇 도입실증지원_기업명.zip, 1. 사업신청서_기업명.pdf)
- '25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전년도('23년, '24년) 자료 제출
- 재무제표 확인 및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온라인 사업설명회 안내

- 일 시 : 2026. 3. 10.(화), 14:00 ~ 15:00
- 주요내용 :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 안내 등
- 신청방법 : 사전 참석 신청 (<https://naver.me/x0Of9W66>)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지원유형 ① 제조로봇 도입 · 실증 지원

□ 서류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서류평가 기준표에 따라 재무평가, 서류평가 실시
- (선정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구분	평가내용	배점
공정부합도(30)	공정 기능의 유사, 작업순서, 공정 설계의 유사성	30
설비 유사성/필요성(30)	제조로봇 유사성, 로봇 역할, 주변설비 구성의 유사성/필요성	30
공정 난이도(30)	작업물 및 공정 특수성, 환경 및 제한조건, 시스템 난이도	30
공정 디지털화(10)	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기준	10
가점	5대 핵심기술* 기반 국산 로봇부품 탑재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1
	경기도 소재 공급기업(SI기업)	+2
합 계		100(+3)

※ 동점자 발생 시 평가 기준표의 '구분'(공정부합도, 설비 유사성/필요성, 공정 난이도, 공정 디지털화)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첨단화 및 지능화 기준표

첨단화	Level 5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모바일로봇+협동로봇)	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직교 로봇 (3축 이상)	직교 로봇 (3축 미만)
		AGV (payload 100kg 이상)	AGV (payload 100kg 이상)	스카라 로봇	
		AMR		델타 로봇	
지능화	Level 5	Level 4	Level 3	Level 2	Level 1
공정	AI,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수집 (시계열 데이터)	비전 시스템	MES	기타 센서

□ 발표평가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 (평가기준) 발표평가 기준표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구분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3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5
수행능력(30)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10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10
	과제 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30)	로봇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	10
	로봇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10
	로봇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	10
수행의지(10)	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	10
합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발표평가 기준표의 '구분'(사업계획 적정성, 수행능력,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 수행의지)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유형 ② 제조로봇 고도화 지원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시행하며 신청과제가 모집 규모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

□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배점
고도화 필요성(40)	현 운영 로봇/공정 문제 정의 명확성	20
	목표 및 성과의 명확성	20
사업계획 적정성(40)	개선안의 적합성	20
	추진 체계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10
	KPI 달성 가능성	10
사업능력(20)	사업 수행 이해도	10
	수행기업의 운영역량	10
합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 기준표의 '구분'(고도화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능력)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 유의사항

□ 감점사항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은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7)」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확인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첨부3-1))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서류평가 제외 대상

- 아래 사항이 포함된 기업은 서류평가 제외

구분	지원제외 기준
1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2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2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문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이미 정부 및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도입기업이 유관사업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경기도비 입금 후 30일 이내에 선금(로봇시스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최종결과물은 성과활용기간(5년)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12, 9122